

# VAT의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에 대한 評價와 調整의 基本方向

1998. 12

金 裕 燦

**KIPF** 한국조세연구원

## 目 次

I. VAT 免稅 및 零稅率 適用의 經濟的 效果 .....	7
II. 우리나라의 VAT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와 최근의 稅法 改正 論議 .....	10
1. 우리나라의 VAT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 .....	10
2. 최근의 VAT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에 대한 稅法 改正 論議 .....	14
III. VAT 免稅 및 零稅率 許容 程度의 國際比較 .....	17
1. 附加價值稅率의 國際比較 .....	17
2. 附加價值稅 課稅標準의 擴大趨勢 .....	20
3. 附加價值稅 免稅範圍의 國別 隔差 .....	21
IV. 우리나라의 VAT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에 대한 評價 ...	26
1. 附加價值稅收와 GDP의 國際比較를 통한 評價 .....	26
2. 個別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의 國際比較 .....	27
3.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의 年度別 變化와 評價 .....	27
V. 免稅 및 零稅率 適用分野의 課稅轉換 基準 및 調整의 基本方向 .....	38
1. 最適消費課稅理論 .....	38

2. 個別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 設定의 政策的 根據 .....	39
3.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 調整의 基本方向 .....	40
<b>VI. 主要 課稅轉換對象 免稅 分野 .....</b>	<b>43</b>
1. 專門人的用役 .....	43
2. 營利目的 教育用役 .....	46
3. 金融서비스 .....	49
4. 政府業務 代行團體 .....	53
<b>VII. 結論 및 要約 .....</b>	<b>58</b>
<b>參考文獻 .....</b>	<b>60</b>

## 表目次

〈表 1〉 零稅率下的 稅負擔 .....	7
〈表 2〉 免稅制度下的 稅負擔 .....	8
〈表 3〉 OECD 國家들의 附加價值稅制 .....	17
〈表 4〉 VAT의 國際比較 I : 稅率構造(1996) .....	18
〈表 5〉 VAT의 國際比較 II : 稅收規模(1994) .....	19
〈表 6〉 附加價值稅收, 標準稅率 및 課稅標準 推定(1993) .....	20
〈表 7〉 標準的인 免稅範圍에 대한 國別 隔差 .....	21
〈表 8〉 差等稅率構造下的 該當品目 .....	23
〈表 9〉 우리나라 附加價值制度上的 免稅範圍와 OECD 標準免稅範圍의 比較 .....	27
〈表 10〉 附加價值稅와 GDP 比率의 年度別 變化 .....	28
〈表 11〉 附加價值稅 免稅와 零稅率 適用範圍의 改正內容 .....	30
〈表 12〉 主要 課稅轉換 對象分野의 比較 .....	41
〈表 13〉 人的用役 課稅轉換時의 豫想 稅收效果 .....	45
〈表 14〉 全家口의 消費支出 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教育費와 利子支出 比重(1996).....	47
〈表 15〉 家口當 月平均 補充教育費 支出 推移 .....	48
〈表 16〉 私設學院의 主要 教育用役に 대한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	49
〈表 17〉 銀行部門의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	52
〈表 18〉 保險部門의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1996) .....	52
〈表 19〉 政府業務 代行團體의 範圍와 業務 .....	53

## I. VAT 免稅 및 零稅率 適用의 經濟的 效果

附加價値稅의 免稅制度는 특정 업체나 업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면세기업은 附加價値稅의 納稅義務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기장이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보유의무가 없다.

면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免稅制度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면세제도가 多段階 非累積的 消費稅로서의 부가가치세의 기본골격을 붕괴하는 데 있다. 免稅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 적용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한다. 따라서 중간단계에 있는 거래자를 면세시키면 최종단계 거래자의 稅負擔은 면세시키지 않는 경우보다 더 크게 된다. 이 누적효과는 零稅率 적용의 경우에 나타나는 환수효과(catching-up effect)보다 더 강하다.

〈表 1〉 零稅率下의 稅負擔

	거래 단계	매출액	매입액	세율 (%)	매출 세액	매입 세액	납부 세액	납부 세액 합계
영세율을 도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조	100	0	10	10	0	10	25
	도매	150	100	0	0	10	-10	
	소매	250	150	10	25	0	25	
영세율을 소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조	100	0	10	10	0	10	0
	도매	150	100	10	15	10	5	
	소매	250	150	0	0	15	-15	

영세율제도하에서는 영세율이 最終去來段階에 적용되면 非課稅 效果가 의도대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表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종단계 이전에 적용되면 非課稅의 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 도매단계에 零稅率 이 적용되면 소매단계의 사업자는 도매단계의 零稅率 적용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결국 零稅率 적용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모두 환수되는 것이다. 零稅率制度下에서 기업이나 사업자는 통상의 과세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記帳과 稅金計算書 作成 의무가 부과되며 신고에 의해 전단계의 납부세액이 환불된다.

영세율 적용과 달리 면세제도에서는 매출세액은 면세에 의해 零(0)이 되지만 전단계세액공제(환급)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세가 중간거래단계인 도매단계에 적용되면 前段階稅額控除가 否認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과세의 누적이 발생하여 전체 단계의 납부세액 합계는 정상적인 과세의 경우보다 세액공제부인액만큼 증대된다. 최종거래단계인 소매단계에 면세가 이루어져도 전단계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

<表 2> 免稅制度下的 稅負擔

	거래 단계	매출액	매입액	세율 (%)	매출 세액	매입 세액	납부 세액	납부 세액 합계
면세율을 도매 단계에서 적용 하는 경우	제조	100	0	10	10	0	10	35
	도매	150	100	면세	0	10 <sup>1)</sup>	0	
	소매	250	150	10	25	0	25	
면세율을 소매 단계에서 적용 하는 경우	제조	100	0	10	10	0	10	15
	도매	150	100	10	15	10	5	
	소매	250	150	면세	0	15 <sup>1)</sup>	0	

註: 1) 환급이 불가능함.

전한 비과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면세기업이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경우 免稅制度는 완전과세 제도보다 租稅輕減을 가져오지만, 면세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제도가 완전과세제도보다 稅負擔을 증대시킨다. 왜냐하면 면세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기업이 부담한 買入稅額은 과세기업에게 轉嫁되지만 과세기업이 다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면세기업으로부터 전가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재화는 重複課稅될 수 있으며 價格體系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거래과정 까지도 왜곡시킨다.

## II. 우리나라의 VAT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와 최근의 稅法 改正 論議

### 1. 우리나라의 VAT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

#### 가. 附加價値稅法上的 附加價値稅 免稅範圍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에 따르면, 附加價値稅法에 규정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 및 財貨의 輸入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며, 租稅減免 規制法에 규정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

부가가치세법상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附加價値稅를 免除하고 있다.

- ① 미가공 식료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농·임·축·수산물
- ②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
- ③ 教育用役
- ④ 金融·保險用役
- 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⑥ 인적용역
- ⑦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

기, 기타 이들과 유사한 행사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⑧ 종교·자산·학술·구호·기타 공익 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⑨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⑩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⑪ 기타 토지,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전매품 및 제조담배,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식물원에의 입장 등
- ⑫ 旅客運送用役(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또한 租稅減免規制法上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國民住宅 및 당해 주택의 建設用役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그리고 일반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곤란한 島嶼로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③ 공장·광산·건설사업 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路線旅客自動車 運送事業者의 事業場과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福利厚生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④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代行用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社會間接資本施設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財貨의 輸入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財貨의 輸入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과 조세 감면규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免除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미가공 식료품
- ②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③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科學·教育·文化用으로 수입하는 재화
- ④ 宗教儀式·慈善·救護 기타 公益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보호단체에 寄贈되는 재화
- ⑤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 ⑥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⑦ 移徙, 移民 또는 相續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
- ⑧ 여행자휴대품, 발송품과 우송품으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그 簡易稅率이 적용되는 재화
- ⑨ 수입하는 商品見本과 廣告用物品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⑩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⑪ 條約·國際法規 또는 國際慣習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⑫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⑬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서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것
- ⑭ 관세가 無稅이거나 減免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또한 租稅減免規制法上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財貨의 輸入項目은

다음과 같다.

- ① 무연탄
- ②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③ 과세사업에 이용될 선박
- ④ 과세사업에 이용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 ⑤ 지방자치단체,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 대회관련 시설주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⑥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⑦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⑧ 지방자치단체,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 대회관련 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⑨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
- ⑩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 제3차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國內製作이 곤란한 것

#### 나. 附加價值稅法上的 附加價值稅 零稅率 適用範圍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零稅率이 적용된다.

- ① 외국에 輸出하는 재화
  -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外國航行用役
  - ④ 외국에 수출하는 재화와 선박 또는 항공기의 外國航行用役을 제외한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감면규제법상 零稅率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와 비상대비지원관리법에 의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② 국군조직법에 의한 군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③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都市鐵道建設用役
- ④ 비료, 농약, 농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어구 등 농업용 기자재 그리고 장애인용 보장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최근의 VAT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에 대한 稅法改正 論議

최근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課稅衡平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자동차 운전학원 등과 같은 專門職 從事者의 서비스에 대한 면세를 課稅轉換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이는 국제통화기금과 합의한 사항인 데다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를 내포하는 조치이다. 부가가치세 免稅對象縮小 次元에서 논의되었던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專門人的用役に 대한 附加價値稅 課稅轉換(국회 계류)

현행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 등 전문자격자가 제공하는 人的用役に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免稅되고 있으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들 인적용역은 단순 근로용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附加價値稅制를 시행하고 있는 EU 국가 등에서도 대부분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과세전환대상 구제업종에는 개인·법인 등이 공급하는 용역(사업서비스업)<sup>1)</sup>이 해당된다.

### 나. 學院 등의 敎習用役に 대한 附加價値稅 課稅轉換(국회 계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학원·교습소 등에서의 敎育用役に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문리분야의 학원 중 외국어학원(성인대상), 성인고시학원, 인문사회계열 학원과 서비스계열 학원으로 기술분야 학원 중에는 자동차운전학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을 포함하여 과세(고교생 수준 이하의 학생대상 학원은 현행 면세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유럽 국가 등에서도 학교 등에서의 비영리교육은 면세하나, 營利敎育에 대해서는 대부분 課稅하고 있다. 이러한 영리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수요자가 주로 중산층 이상이며 수강여부가 선택적·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

1) 변호사업, 공중인·변리사·법무사 및 행정사업, 집달관업, 해사보좌인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관세사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상담소·작명·관상·점술업, 동물훈련업 등을 말함.

다. 政府業務 代行團體의 一部 業務에 대하여 附加價值稅 課稅  
(시행규칙 개정 검토중)

현행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농·수·축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30개 政府業務 代行團體의 目的事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民間部門과의 課稅衡平을 도모하고, 가격체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업무 중 민간경쟁관계에 있는 음식점업·수영장 등 휴양시설업, 소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除外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과세전환 대상단체의 사업에는 농·수·축협 등이 읍면지역에서 행하는 소매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휴양시설업, 공항관리공단의 음식점업이 이에 해당된다.

### III. VAT 免稅 및 零稅率 許容 程度의 國際比較

#### 1. 附加價值稅率의 國際比較

부가가치세의 최초 도입시에는 OECD 국가들의 標準稅率이 평균 12.5

〈表 3〉 OECD 國家들의 附加價值稅制

(單位: %)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도입초기 표준세율	현재 표준세율
오스트리아	1973	16	20
벨기에	1971	18	21
캐나다	1991	7	7
덴마크	1967	10	25
핀란드	1969	11.1	22
프랑스	1964	20	20.6
독일	1968	10	15
그리스	1987	16	18
아이슬란드	1989	22	24.5
아일랜드	1972	16.4	21
이탈리아	1973	12	19
일본	1989	3	5
룩셈부르크	1970	8	15
멕시코	1960	10	15
네덜란드	1969	12	17.5
뉴질랜드	1986	10	12.5
노르웨이	1970	20	23
포르투갈	1986	16	17
스페인	1986	12	16
스웨덴	1969	11.1	25
스위스	1995	6.5	6.5
터키	1985	10	15
영국	1973	10	17.5
평 균		12.5	17.3

資料: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5.

%였으나 현재는 평균 17.3% 수준에 이른다(〈表 3〉 참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복수(다수)세율의 부가가치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表 4〉).

〈表 4〉 VAT의 國際比較 I : 稅率構造(1996)

(單位: %)

	경감세율	표준세율	할증세율
오스트리아	10/12	20	—
벨기에	0/1/6/12	21	—
캐나다	0	7	—
덴마크	—	25	—
핀란드	0/6/12/17	22	—
프랑스	2.1/5.5	20.6	—
독일	7	15	—
그리스	4/8	18	—
아이슬란드	14	24.5	—
아일랜드	0/2.5/10/12.5	21	—
이탈리아	4/10/16	19	—
일본	—	3	—
룩셈부르크	3/6/12	15	—
멕시코	0/10	15	—
네덜란드	6	17.5	—
뉴질랜드	—	12.5	—
노르웨이	0	23	—
포르투갈	5/12	17	—
스페인	4/7	16	—
스웨덴	6/12	25	—
스위스	2	6.5	—
터키	1/8	15	23/40
영국	0/2.5/8	17.5	—

註: GST 포함.

資料: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7.

<表 5> VAT의 國際比較 II : 稅收規模(1994)

(單位: %)

	VAT稅收의 GDP比重	VAT稅收의 全體稅收比重
캐나다	5.6	15.5
멕시코	3.0	16.1
미국	2.2	7.9
호주	2.6	8.5
일본	1.5	5.3
뉴질랜드	8.4	22.8
오스트리아	9.0	20.9
벨기에	7.3	15.6
체코	8.3	17.6
덴마크	10.0	19.4
핀란드	8.5	18.0
프랑스	7.6	17.2
독일	7.1	18.1
그리스	9.4	22.1
헝가리	8.4	20.4
아이슬란드	9.8	31.8
아일랜드	7.5	20.0
이탈리아	6.4	15.4
룩셈부르크	6.1	13.5
네덜란드	6.7	14.7
노르웨이	8.5	20.6
폴란드	7.2	16.7
포르투갈	7.5	22.8
스페인	5.6	15.5
스웨덴	8.6	17.2
스위스	2.7	7.9
터키	6.8	30.4
영국	6.7	19.8
OECD 전체	6.7	17.5
OECD 아메리카	3.6	13.2
OECD 태평양	4.1	12.2
OECD 유럽	7.5	18.8
EU 15	7.6	17.9

註: GST 포함.

資料: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7.

## 2. 附加價值稅 課稅標準의 擴大趨勢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金融, 不動產貸貸, 醫療, 教育, 慈善, 賭博 등의 서비스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서적, 신문, 교통, 식료품과 같은 재화와 용역에는 보다 낮은 세율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表 6〉 附加價值稅收, 標準稅率 및 課稅標準 推定(1993)

(單位: %)

	표준세율	부가가치세수 비중 (GDP 기준)	과세표준 (평균 = 100)
오스트리아	20	8.3	102
벨기에	20.5	7.0	84
캐나다	7	2.6	90
덴마크	25	9.8	96
핀란드	22	8.6	96
프랑스	18.6	7.5	99
독일	15	6.8	111
그리스	18	8.5	116
아이슬란드	24.5	9.9	99
아일랜드	21	7.0	82
이탈리아	19	5.6	72
일본	3	1.5	123
룩셈부르크	15	6.7	110
네덜란드	17.5	7.0	98
뉴질랜드	12.5	8.2	161
노르웨이	22	9.1	102
포르투갈	16	6.2	95
스페인	15	5.1	83
스웨덴	25	8.5	83
스위스	6.5	2.7	102
터키	15	5.7	93
영국	17.5	6.6	93
평균	17.1	6.8	99.5

資料: Owens, J. and E. Whitehouse., "Tax Reform for the 21st Century,"  
Bulletin, IBFD, Nov./Dec., 1996.

그러나 최근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減免對象을 縮小하는 傾向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지출행태의 왜곡을 줄이고 經濟의 效率性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3. 附加價值稅 免稅範圍의 國別 隔差

OECD에서 보는 부가가치세의 標準的인 免稅範圍은 우편서비스, (치)의료서비스, 자선사업, 교육,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 활동, 문화사업, 보험과 재보험, 부동산의 임대, 금융서비스, 복권과 도박, 토지와 건물의 공급 등이다.

〈表 7〉 標準的인 免稅範圍에 대한 國別 隔差

	標準免稅範圍 分野 以外の 免稅	標準免稅範圍 分野에 대한 課稅
오스트리아	통신사업	임대(개인주택), 병원(경감세율)
벨기에	법률서비스	-
캐나다	육아, 극빈자를 위한 법률구조, 도선영업, 도로·다리의 통행료, 표준지역서비스	복권, 도박, 상업용지와 건물의 공급 리스, 국내우편서비스
덴마크	여객수송, 스포츠, 장의업, 신진 축물의 매각, 여행 안내업	라디오 TV 방송, 극장 영화관
핀란드	공연업, 문학과 예술작업에 대한 판권, 예술가에 의한 시각예술품의 매각, 맹인에 의한 상거래, 공동묘지업	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프랑스	없음(법률서비스는 1991년 이래 과세)	건축단지와 새건물의 매각
독일	-	-
그리스	-	문화(경감세율)
아이슬란드	스포츠, 여객수송, 작가, 작곡가, 장의업	-
아일랜드	여객수송, 방송, 공공수도업, 스포츠 경기 입장료, 장의업과 여행 안내업	상업용 부동산의 장기임대, 토지와 건물의 공급

〈表 7〉의 繼續

	標準免稅範圍 分野 以外의 免稅	標準免稅範圍 分野에 對한 課稅
이탈리아	지역여객수송, 장의업	상업용 토지와 건물의 공급과 임대(표준세율)
일본	사회복지사업	상업용 건물의 임대, 우편서비스, 비영리기관의 비상업활동, 문화서비스, 건물의 공급
룩셈부르크	—	—
멕시코	국내·국제 화폐거래, 금, 운송, 개인납세자에 의한 경영 농업업	우편서비스와 보험, 부동산 임대
네덜란드	화장 장의업, 공공방송, 스포츠(입장료 제외)	문화서비스(주로 경감세율)
뉴질랜드	귀금속의 공급(금, 은, 플래티늄)	우편서비스, (치)의료서비스, 자선활동(무조건부 중여 제외),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 활동, 문화서비스, 보험과 재보험(생명보험과 재보험 이외), 부동산 임대(주거시설 제외), 복권과 도박, 토지와 건물의 공급(5년 이상 동안 주거시설로 사용해 온 토지와 건물 제외)
노르웨이	스포츠, 여객수송, 법률서비스, 장의업, TV, 호텔, 중개서비스, 자문서비스	—
포르투갈	농업	—
스페인	문학과 예술작업에 대한 판권	소비자가 대금을 치르는 일부 문화서비스
스웨덴	공공 TV와 라디오, 저작권, 특정 회원권, 출판, 공동묘지업	우편서비스
스위스	재사용 가능한 컨테이너, 일정 우편서비스, 우표, 사회사업, 일정 조건하에 대리 근로자의 공급, 중고품	단기주차, 특정 은행서비스, 치과 기공업
터키	해상인도와 보수작업, 사업용 항공업 또는 철도수송업, 사회복지사업, 농업용수	교육과 문화서비스, 신문, 책, 잡지(경감세율), 우편업, 상업용 건물의 매각, 임대, 라디오와 TV 방송, 병원, 복권과 도박
영국	화장·장의업, 스포츠 경기	새 상업용 빌딩의 공급은 완료일로부터 2년 동안 표준세율로 과세

資料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7.

〈表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은 면세범위 설정에 있어서 나라마다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는 표준면세범 위 이외의 분야에는 거의 면세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준면세범 위 에 속하는 분야에도 대체로 과세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그다지 많은 분야에 허용하지 않으나 영세를 적용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이며 또 상당히 넓은 분야에 輕減稅率을 적용하는 것을 〈表 8〉에서 볼 수 있다.

〈表 8〉 差等稅率構造下的 該當品目

	零稅率	輕減稅率	割増稅率
오스트리아	—	농업, 책, 식료품, 임업, 병원, 신문, 예술, 문화, 임대수송, 농민에 의한 와인공급 (12%)	—
벨기에	장애인용 자동차, 신문과 주간지	농업, 창작예술, 의류, 식료품, 석탄과 코크스, 금	—
캐나다	약, 기본 식료품, 수출품, 회계업 (주로 비거주자 대상), 농어업 생산물, 의료설비, 국제여행과 운송업, 국제기관과 직원, 농업, 귀금속	—	—
덴마크	신문	—	—
핀란드	항공기와 국제운송 출판물 회원에 대한 신문구독과 정기간행물업	식료품, 무알콜 음료, 사료, 의약품, 책, 여객수송, 숙박시설, TV면허, 문화예술, 스포츠, 영화관 입장료	—
프랑스	—	의약품, 장애인 장비, 책, 호텔, 연회, 저작권, 박물관, 수송, 여행, 여객수송, 숙박시설, 농업, 책, 케터링 서비스, 식료품, 신문과 물	—
독일	—	책, 식료품, 신문, 수송	—
그리스	—	책, 문화, 식료품, 의약품, 신문	—
아이슬란드	국제운송, 설비, 국제수송선박과 항공기를 위한 연료와 장비, 조선	식료품, 신문, 책, 호텔, 온수, 집과 수영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전기와 연료유	—

〈表 8〉의 繼續

	零稅率	輕減稅率	割増稅率
아일랜드	책, 아동의류와 신발, 구강의약품, 의료장비, 식료품, 씨앗, 비료	신문과 정기간행물, 일정용도의 연료, 전기, 예술작업, 수의업, 농업, 자동차와 보트 임대, 운전교육, 사진, 콘크리트, 휴일 숙박시설, 레스토랑 호텔 음식, 건축업, 부동산, 보수업, 쓰레기매각, 식료품, 여행안내업, 영화 음악공연 입장료와 스포츠 시설	—
이탈리아	책, 신문, 고철, 재활용 종이	식료품, 의약품, 통신, 주간출판물과 숙박시설	—
일본	—	—	—
룩셈부르크	—	농업, 책, 식료품, 연료, 의약품, 신문	—
멕시코	고무를 제외한 비산업용 동물과 야채류, 금, 소매용 귀금속과 공공용 예술품, 재화와 용역의 수출, 특허의약과 식료품 제외, 청량음료 제조를 위한 농축액과 즙, 캐비어류의 고급(사치)품 혹은 혼계연어와 즉석 소비용 식료품	과세는 과세대상행위가 지역내 거주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위에 언급된 지역 내에서 용역이 이루어지거나 재화가 인수되었을 경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네덜란드	—	숙박시설, 농업, 책, 출장요리, 식료품, 장애인, 의약품, 신문, 여객수송, 물, 스포츠 입장료, 고미술품	—
뉴질랜드	계속 진행되는 과세가능 사업의 공급, 귀금속상에 귀금속을 정련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귀금속(금, 은, 플래티늄) 공급, 지방당국 석유세의 지방당국에 의한 공급(지방당국간 지방 석유세의 배분), 재화와 용역의 수출(뉴질랜드의 국경 밖에서 소비될 경우)	상업용 주택에서의 장기체류의 경우 거주에 부속되는 서비스는 공급가격의 60%에 대하여 표준세율이 적용(유효세율은 7.5%)	—

〈表 8〉의 繼續

	零稅率	輕減稅率	割增稅率
노르웨이	책, 신문, 항공기와 배, 수송업, 내륙수로운송업, 중고품 수송	—	—
포르투갈	—	책, 식료품, 장애인, 의약품, 예술, 신문, 연료, 수송, 전기, 숙박시설과 음식점	—
스페인	—	책, 하숙, 출장요리, 일반문화와 연예업, 식료품, 호텔, 음식점, 장애를 위한 제공, 의약품, 수송, 신문, 공공오락장, 장의업, 농림업, 국내여객수송	—
스웨덴	상업용 항공기와 선박, 항공기 연료, 처방의약품, 회원에 위한 출판인쇄물	숙박시설, 식료품, 여객수송, 스키 리프트, 신문, 창작예술활동, 골동품 수입, 기사수집가와 예술활동	—
스위스	—	물, 식료품, 의약품, 책, 신문, 비상업용 TV	—
터키	—	농업생산물, 임대, 중고차, 신문, 책, 잡지, 기본식료품, 천연가스, 영화, 극장, 오페라, 발레와 교육	캐 비 어 류, 연료, 다이아몬드, TV, 세탁기, 자동차, 여객선, 총, 카지노업, 나이트클럽, 자동차 임대, 요트, 채단기, 헬리콥터, 비행기, 유선텔레비전
영국	아동의류, 식료품, 여객수송, 책, 신문, 가정의 오수와 물, 처방약, 의약품, 장애인 특정 원조품	가정과 자선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연료와 동력(8%)	—

資料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7.

## IV. 우리나라의 VAT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에 대한 評價

### 1. 附加價值稅收와 GDP의 國際比較를 통한 評價

1993년의 OECD 국가들의 평균 VAT 標準稅率은 17.1%, GDP에서 차지하는 附加價值稅收의 比重은 6.8%이다. 이러한 정도로 물품 및 서비스 거래가 과세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범위 평가지수 100으로 본다. 과세표준범위 평가지수는 개별국가와 OECD 평균세수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비중에다가 개별국가와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을 나눈 것을 퍼센트로 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국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OECD 평균(100)에 비해서 얼마나 넓은지(면세범위가 얼마나 좁게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3년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였고 標準稅率이 10%이므로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1993년도 과세표준 범위 평가지수는 약 110( $(4.4/6.8) \times 17.1$ )이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 課稅標準의 範圍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넓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식품, 의류 등의 생필품이나 신문, 도서 등 廣範圍한 分野에 대하여 輕減稅率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다면 이 범위에 속하는 사업분야의 세수기여도는 매우 낮으나 과세표준에는 속한 것이므로 GDP와 부가가치세 세수의 비교를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범위에 대한 평가는 설득력에 다소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 2. 個別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의 國際比較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상의 면세범위를 OECD의 표준면세범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OECD 국가표준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다소 방만하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9〉 우리나라 附加價值制度上의 免稅範圍와  
OECD 標準免稅範圍의 比較

공통 면세부문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의 임대, 복권, 토지와 건물공급,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 활동, 자선사업
OECD 표준	도박
한 국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사업, 이사·이민·상속으로 인하여 수입되는 재화, 석유류, 국내제작이 곤란한 스포츠경기관련 수입품 및 철도용 물품, 과세사업에 이용될 선박 및 보세건설용품, 면세재,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운송사업장, 학교급식,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 농·어업의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무연탄, 미식용 농·임·축·수산물, 인적용역

## 3.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의 年度別 變化와 評價

### 가. 附加價值稅와 GDP 比率의 年度別 變化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은 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부분으로서 납부·환급세액과 실세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1987년의 예를 보면 납부세액이 24.3% 증가한 반면 환급세액은 전년도에 비해 47.3%가 증가하고 실세수는 11.4%의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수의 비중은 1980년대에는 평균 2%대에 머물던 것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에는 6.4%로 증가하였다.

〈表 10〉 附加價值稅와 GDP 比率의 年度別 變化

(單位: 億원, %)

	납부세액			환급세액	실세수 (A)	GDP (B)	비중 (A/B)
	계	국내분	수입분				
1977	4,699	2,583	2,116	1,151	3,548	661,722	0.5
1978	13,482 (18.6)	6,892 (166.8)	6,590 (211.4)	4,760 (313.6)	8,722 (145.8)	723,845 (9.4)	1.2
1979	16,631 (23.4)	8,278 (20.1)	8,353 (26.8)	5,414 (13.7)	11,217 (28.6)	775,471 (7.1)	1.4
1980	20,641 (24.1)	9,279 (12.1)	11,362 (36.0)	6,829 (26.1)	13,812 (23.1)	754,656 (-2.7)	1.8
1981	26,319 (27.5)	12,993 (40.0)	13,326 (17.3)	8,850 (29.6)	17,469 (26.5)	801,496 (6.2)	2.2
1982	29,322 (21.6)	15,733 (21.1)	13,589 (2.0)	8,628 (2.5)	20,694 (18.5)	862,309 (7.6)	2.4
1983	35,095 (19.7)	19,755 (25.6)	15,340 (12.9)	10,106 (17.1)	24,989 (20.8)	961,460 (11.5)	2.6
1984	40,668 (15.9)	22,277 (12.8)	18,391 (20.1)	13,287 (31.5)	27,381 (9.6)	1,044,885 (8.7)	2.6
1985	43,750 (7.0)	24,340 (9.3)	19,410 (5.5)	14,045 (5.7)	29,705 (8.5)	1,113,298 (6.5)	2.7
1986	50,565 (15.6)	29,339 (20.5)	21,226 (9.4)	18,132 (29.1)	32,433 (9.2)	1,241,937 (11.6)	2.6
1987	62,854 (24.3)	33,783 (15.1)	29,071 (27.0)	26,715 (47.3)	36,139 (11.4)	1,384,992 (11.5)	2.6
1988	74,002 (17.7)	40,696 (20.5)	33,306 (14.6)	29,422 (10.1)	44,580 (23.4)	1,541,110 (11.3)	2.9
1989	84,015 (13.5)	48,834 (20.0)	35,181 (5.6)	29,063 (-1.2)	54,952 (23.3)	1,639,503 (6.4)	3.4
1990	105,009 (25.0)	61,827 (26.6)	43,182 (22.7)	35,370 (21.7)	69,639 (26.7)	1,795,390 (9.5)	3.9
1991	130,034 (23.8)	78,009 (26.2)	52,025 (20.5)	42,320 (19.6)	87,714 (26.0)	1,959,356 (9.1)	4.5

<表 10>의 繼續

(單位: 億圓, %)

	납부세액			환급세액	실세수 (A)	GDP (B)	비중 (A/B)
	계	국내분	수입분				
1992	144,496 (10.8)	90,650 (16.2)	53,846 (3.5)	41,285 (-2.4)	103,211 (17.7)	2,058,603 (5.1)	5.0
1993	160,738 (11.2)	102,984 (13.6)	57,754 (7.3)	41,396 (0.3)	119,342 (15.6)	2,176,988 (5.8)	5.5
1994	187,923 (16.9)	117,816 (14.4)	70,107 (21.4)	50,879 (22.9)	137,139 (14.9)	2,363,751 (8.6)	5.8
1995	225,403 (19.9)	136,535 (15.9)	88,868 (26.8)	72,431 (42.4)	152,972 (11.5)	2,575,012 (8.9)	5.9
1996	259,402 (15.1)	158,360 (16.0)	101,042 (13.7)	83,579 (15.4)	175,823 (14.9)	2,756,911 (7.1)	6.4

註: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資料: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나.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의 年度別 擴大趨勢

1976년 부가가치세제가 제정되고 난 뒤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데 연도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의 확대 내용은 <表 11>과 같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수출 및 외화획득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적용절차를 간소화하였다. 1976년 부가가치세 제정 당시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12개이던 것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1993년 32개까지 달하였고 1997년 현재에는 31개에 이르고 있다. 1993년에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입 채소종자 등을 면세대상에 포함시켰고 1996년에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자출판물도 비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11〉 附加價値稅 免稅와 零稅率 適用範圍의 改正內容

	면 세	영 세 율
1977		○ 적용대상을 확대 <sup>7)</sup>
1978	○ TV 난시청지역에서의 TV의 중계방송용역을 면제대상 방송용역에 포함 ○ 어촌계, 축산진흥회, 인삼경작조합 등을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	○ 외국인관광객의 범위를 확대하여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는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
1979	○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을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의용역에 포함 ○ 진열용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슬라이드·레코드·테이프 등을 다음 각호 <sup>1)</sup> 의 시설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시 면세	○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에 대해 내국 신용장 개설 없이 수출업자와 직접 염색임가공계약으로도 영세율 적용 가능
1980	○ 부동산임대용역 중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와 전답 등의 토지임대용역만을 면세대상으로 규정 ○ 국제공항관리공단과 축산업협동조합이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되어 면세	
1981	○ 신체장애자용품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시 면세 ○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수입하는 정부비축용 석유에 대해 면세 ○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	

<表 11>의 繼續

	면 세	영 세 율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주택공사의 사업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사업 등은 과세로 전환</li> <li>○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중 사료제조업을 과세전환</li> <li>○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sup>2)</sup>하여 면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개설된 모든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국내 수출의 범위 확대</li> </ul>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종교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 면세</li> <li>○ 우편취급소의 우편서비스사무에 대해 면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재화의 재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li> <li>○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li> </ul>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및 동 시장관리공사를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면세</li> <li>○ 수입학술연구용역에 대해 면세</li> <li>○ 올림픽용으로 수입하는 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에 대해 면세</li> </ul>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양식계, 농어촌개발공사(농수산물비축사업 및 출하조정사업 부문) 및 한국해운조합(선박의 안전운항관리업무)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지정</li> <li>○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등의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면세를 1989년부터 폐지</li> <li>○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제조용 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무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용 원재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제한함</li> <li>○ 해외취업근로자에게 면세쿠폰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자제품 등에 대해 영세율 적용</li> </ul>

〈表 11〉의 繼續

	면 세	영 세 율
1986	○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대해 면세	
1988	○ 학생 및 근로자를 위한 전문기숙사 면세 ○ 수입·임대하는 올림픽방송기자재 면세 ○ 텔레비전 난시청지구에서의 중계 유선방송에 대한 면세에서 텔레비전 중계 유선방송으로 면세요건 완화 ○ 국·외산 제조담배에 대해 똑같이 면세 ○ 투자자문업을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 ○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의 내용 보완 <sup>3)</sup> ○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재단법인 서울장애자 올림픽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하여 면세	○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수출의 범위를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개정
1989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 <sup>2</sup>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본다고 정의를 명료화함. ○ 전기통신설비업과 소방설비사업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 ○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해녀탈의장용 난방설비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면세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시제품 및 자원동원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表 11>의 繼續

	면 세	영 세 율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하여 면세</li> <li>○ 대전세계박람회의 기념주화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금에 대해 면세</li> <li>○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에 대한 면세기간을 1991. 12. 31 까지 1년간 연장</li> <li>○ 적출물처리업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추가</li> <li>○ 면세되는 미가공식품의 범위조정<sup>4)</sup></li> <li>○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임대용역에 면세범위 축소(도시계획구역 내 : 주택바닥면적의 5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관광호텔의 음식·숙박용역에 대한 영세를 적용 폐지</li> </ul>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선협회, 한국무선관리사업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li> <li>○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2년말까지 1년 연장</li> <li>○ 전화사업경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전화세가 과세되는 전화사업에만 면세</li> <li>○ 서적, 음반 등의 외판원에 대한 면세</li> <li>○ 중소기업창업상담용역에 대한 면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관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li> <li>○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용역은 영세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임대용역</li> <li>• 음식·숙박용역</li> </ul> </li> </ul> </li> <li>(다만, 국내주재 외국정부기관, 외교관, 외신기자 등에게 공급되는 음식·숙박용역은 제외)</li> <li>• 국제통화착신용역</li> </ul>

〈表 11〉의 繼續

	면 세	영 세 율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축협이 생산·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3년말까지 1년 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임·어업용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sup>8)</sup></li> </ul>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범위 축소<sup>5)</sup></li> <li>○ 관세가 무세인 수입재화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sup>6)</sup></li> <li>○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할 수입품 면세범위를 축소하여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li> <li>○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4년말까지 연장</li> <li>○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타 통신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3년간 연장</li> <li>○ 수입채소종자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추가</li> <li>○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추가</li> <li>○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추가</li> <li>○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과 같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호텔업자의 외국인관광객<sup>9)</sup> 숙박용역에 대해 1994년 1년간 영세율 적용</li> </ul>

〈表 11〉의 繼續

	면 세	영 세 율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와 2002년 월드컵유치위원회를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면세</li> <li>○ 골동품 수입시 면세</li> <li>○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5년말까지 연장</li> <li>○ 도시편입지역소재 농·수·축협 연쇄점의 소매업에 대해 면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도 폐지</li> <li>○ 축산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율 대상 품목 : 착유기·우유냉각기 등 50종</li> </ul> </li> </ul>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한 면세</li> <li>○ 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용역에 대한 면세</li> <li>○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경영·기술자문용역 면세</li> <li>○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6년말까지 연장</li> <li>○ 신용카드업과 할부금융업에 대한 면세</li> <li>○ 수입컨테이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li> <li>○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 대행단체에서 지정 해소</li> <li>○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지정</li> <li>○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용역을 면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합사료 영세율적용시 부업축산농가의 판정기준을 종전기준에서 120%로 확대</li> </ul>

〈表 11〉의 繼續

	면 세	영 세 율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협조합의 사료제조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7년 6월 30일까지 연장</li> <li>○ 한국통신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7년말 까지 연장</li> <li>○ 과학관이 수입하는 과학시설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li> </ul>	

註: 1) 다음의 각호란 다음과 같음.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
  - ② 대한무역진흥공사 전시관
  - ③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 ④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 ⑤ 수출종합전시관
  - ⑥ 농가공산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 ⑦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회관
- 2) 동 공단의 사업 중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은 계속 과세함.
- 3) 개정된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1801	⑩ 코코아두 (원상 또는 파쇄한 것에 한함)
4. 과실류	0811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물에 삶거나 쪄진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5. 채소류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 4) 식용이 곤란한 다음 물품을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제외함.
- ① 특용작물표 중 코프라, 아마인, 유채,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중 파암넛과 핵·면실·피마자·잇꽃씨·양귀비를 제외
  - ② 수축류 중 말은 경주말, 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
  - ③ 생선류 중 활어는 관상용의 것을 제외
- 5)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중 모든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공무원연금매점 및 농·수·축·임업협동조합의 시지역 이상 슈퍼·연쇄점사업을 과세로 전환

- 6)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 중 백신, 헬리콥터, 골동품 등 54개 세목 (관세율표 기준)을 과세로 전환
- 7) 적용대상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까지 포함
- 8) 임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가 영림업·벌목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 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을 적용하며 임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① 임업용 동력천공기
  - ② 임업용 약제주입기
  - ③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 포함)
  - ④ 임업용 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
  - ⑤ 임업용 원치
  - ⑥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 9)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자는 제외함.
  - ① 법인
  - ②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 포함)
  - ③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 다. 綜合評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의 免稅範圍은 1977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附加價値稅의 比重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즉, 면세범위의 확장이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세 稅收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거래 단계의 免稅는 다음 단계의 사업자가 還給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의 附加價値稅負擔은 정상적인 과세의 경우보다 오히려 증가되는 누적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附加價値稅 稅收入도 오히려 增加할 수 있는 것이다.

## V. 免稅 및 零稅率 適用分野의 課稅轉換 基準 및 調整의 基本方向

### 1. 最適消費課稅理論

최적소비과세이론은 주어진 조세수입의 목표를 달성하며 超過負擔을 最小化하는 소비세구조를 모색하는 이론체계이다. 이에 관하여 램제이(Ramsey)는 과세에 의한 각 재화의 상대적 수요감소가 같아지는 세율구조를 가질 때 最適課稅가 된다고 보았다. 이는 均一稅가 효율적 과세라고 보는 기존의 고전적 견해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과세 후에는 과세 전에 비해 각 재화에 대한 수요가 변화할 것이지만 과세 후에도 각 재화의 상대적 소비에 변화가 없다면 厚生의 損失은 극소화될 것이므로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가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도록 個別的 稅率을 정해지면 最適消費稅 體系가 실현된다는 것(Ramsey rule)이다. 이는 각 재화의 수요가 상호독립적(수요의 교차탄력성이 0)인 경우 最適消費稅 體系는 각 재화에 대한 세율이 당해 재화의 需要彈力性和 逆比例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inverse elasticity rule)으로서,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낮은 재화일수록 고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콜렛-헤이그(Corlett-Hague)는 여가(leisure)를 제외한 다른 상품에만 物品稅를 부과할 경우 그 상품이 여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율구조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즉, 餘暇와 補充的인 상품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代替的인 상품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Corlett-Hague rule)

으로 효율성의 관점에서 여가까지 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불가능하므로 여가와 補完的인 商品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여가에 대해 間接的으로 과세하는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리의 근거이다.

Ramsey rule 등의 최적소비과세이론은 경제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납세자의 초과부담이 극소화되는 조세제도를 찾으려고만 했지 조세부담의 公平한 分配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요의 價格彈力性이 낮은 물건은 대개 생활필수품인데 이에 대하여 物品稅를 증과해야 한다는 논리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세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람의 과세형평감과 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다.

## 2. 個別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 設定의 政策的 根據

정책실천과정에서 特定去來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다음 일곱 가지이다.

첫째, 所得分配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상대적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몇몇 재화는 社會的 觀點에서 소비가 勸獎되어야 할 재화(meritorious goods)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데 책, 신문, 잡지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 몇몇 재화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상태에서 그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그에 대한 供給이 擴大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의료용역, 국민주택 등에 관련되는 건설용역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토지, 근로소득 등의 기본적인 生産要素와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상 과세함이 부적합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인데 金融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免稅된다.

여섯째, 특정 재화나 용역에 다른 형태의 과세, 특히 개별소비세의 형태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附加價值稅가 免除되는바, 전화세가 부과되는 전화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이다.

일곱째, 일정규모 이하의 零細納稅者는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면세된다.

### 3.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 調整의 基本方向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附加價值稅의 免稅範圍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課稅對象, 즉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특성이나 재화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免稅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원재료 등 중간재를 면세하는 경우 오히려 가격인상을 초래하여 消費者負擔의 增加를 야기시키므로 최종 소비단계에서 면세하여야 한다. 지원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분야에 대하여 免稅를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면세분야의 재화는 다른 과세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에서 유리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늘어나서 자원의 사회적 效率的 배분을 해친다. 뿐만 아니라 면세는 면세 재화를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換급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동 사업자는 오히려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비싼 물건을 구입하게 하여 경쟁의 왜곡을 초래한다.

셋째, 경제순환에 있어서의 中立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일부에만 과세해서는 안 된다.

넷째, 면세 적용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政策的 目標에 부합하며 이 목표와의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중

명되어야 한다.

다섯째, Ramsey rule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간접세 비중의 증가로 인하여 세부담의 逆進性 增加가 우려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稅負擔의 衡平性이 증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가가치세의 방만한 면세 허용은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장점인 稅金計算書 收受를 통한 상호대사기능(cross check system)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어서 附加價値稅의 脫漏를 용이하게 하므로 가능한 한 면세는 억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면세범위 조정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제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면세혜택 분야로서 인적용역, 교육용역 중 營利目的의 私設教育用役, 金融·保險用役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이나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 수 있다.

〈表 12〉 主要 課稅轉換 對象分野의 比較

	사업자의 특성에 따른 면세	세부담 형평성	경쟁의 중립성	비 고
인 적 용 역	×	○		• OECD 국가들 대체로 과세
영 리 목 적 사설교육용역	×	○		• OECD 국가들 대체로 과세
금 융 서 비 스	×	○		• OECD 국가들 대체로 비과세 • 현재 과세전환이 필요한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함. • 기술적 어려움이 있음
정 부 업 무 대 행 업 체	○		○	

전문인적용역, 영리목적 사설교육용역,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경우는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서 免稅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용역이므로 稅負擔의 衡平性에 문제를 야기시키며 政府業務 代行業體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의 특성에 따른 면세적용이라는 점과 민간이 제공하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경쟁관계에서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 VI. 主要 課稅轉換對象 免稅 分野

### 1. 專門人的用役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免稅對象이 되는 人的用役은 크게 법무·회계·기술서비스 등과 같은 事業서비스와 저술가·조각가·감독·음악가·직업운동가 등과 같은 自由職業의 用役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인적용역은 노동용역과 성격이 유사하여 많은 경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생산요소인 勤勞用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잘못된 논리에서 구 영업세제하에서 인적용역의 공급은 營業行爲로 간주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영업세도 非課稅되었고 부가가치세 도입과정에서도 免稅로 규정하게 되었다.

勤勞用役은 구매계약에 의해서 사업체 외부에서 구입되는 경우(전문 인적용역, 근로자과건용역 등)와 근로계약에 의해 사업체 내부에서 제공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근로용역에 대한 지불대가는 사업체 자체의 가치창출을 구성하는 일부이며 이는 附加價值稅 課稅對象이다. 따라서 같은 성격의 근로용역이 사업체 외부로부터 구매계약에 의해 공급된다고 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인적용역 중에는 課稅行政上 또는 납세비용상 그 課稅가 不可能에 가까운 것이 있고(예컨대, 접대부·댄서의 용역) 國民厚生的 또는 文化關聯的인 人的用役도 혼재해 있다. 이러한 인적용역은 그 본질상 과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社會政策的, 文化政策的인 측면을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法務·會計·技術서비스 등의 事業서비스는 여타 財貨의 供給과 구별하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더

육이 法務·會計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高所得層이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비과세하는 것은 稅負擔의 逆進性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課稅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용역업 중 學術研究用役, 技術研究用役은 技術開發 支援의 政策的 차원에서 課稅轉換 對象에서 除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을 과세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稅收效果는 1997년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리·중개업의 부가가치율 43.8%를 적용할 경우 法務·會計·技術서비스로부터 2,800억원 이상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sup>2)</sup>. 다만 여기서 인적용역이 과세사업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의 買入稅額控除額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인적용역의 과세전환을 통한 직접적인 추가세수효과는 이보다 적을 것이나 국가 전체의 세수입은 직접적인 세수증가 이외에도 인적용역 분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이 분야 용역제공자들의 課稅場陽性化를 강제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附加價値稅 및 所得稅 納付稅額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인적용역의 과세전환을 통한 간접적인 추가세수효과를 포함한 추가세수는 2,80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은 외국으로부터 인적용역의 수입이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권의 확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소비세과세에 대하여 국제적인 규범은 消費地國課稅原則이 확고히 있으나, 지금까지 용역은 공급과 동시에 소비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 달리 공급자의 공급장소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서비스의 경우도 供給場所와 消費場所가 다를 수 있게 되었으며 EU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과세에 있어

2) 전문인적용역제공자의 부가가치율은 대리·중개업에 대한 국세청의 표준부가가치율 43.8%보다 실제적으로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전문인적용역제공자가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의 세수 증가효과도 2,800억원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도 소비지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문인적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면 다른 수입품에 비하여 人的用役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며, 극단적인 경우 우리나라가 과세하지 않는 수입인적용역을 공급자의 거주지국에서 課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稅收入만 잃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表 13〉 人的用役 課稅轉換時的 豫想 稅收效果

(單位：명, 백만원)

	1991			1997		
	인 원	수입금액 <sup>1)</sup>	세수효과 <sup>2)</sup>	인 원 <sup>3)</sup>	수입금액 <sup>4)</sup>	세수효과
辯護士	1,841	209,194	9,162	3,364	614,108.2	26,898
辨理士	168	21,419	9,38	511	105,802.7	4,634
法務士	2,322	66,652	2,919	3,523	164,228.9	7,193
公認會計士	658	33,452	1,465	4,151	342,716.5	15,011
稅務士	2,473	267,138	11,701	3,371	591,365.0	25,902
關稅士	333	91,324	4,000	535	238,276.1	10,436
導船士	85	15,782	604	139	42,151.6	1,846
建築士	3,530	596,448	26,124	6,656	1,826,405.6	79,997
技術士	248	38,754	1,697	9,743	2,472,541.5	108,297
總計	11,658	1,340,163	58,610	31,993	6,397,597.1	280,214

註：1) 1991년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임.

2) 세수효과 산출은 대리·중개업의 부가가치율 43.8%를 적용하였음.

3) 1997년 말 기준 자료이나 기술사 인원은 1998년 1월 23일자 기준임.

4) 수입금액은 연간 소득증가율이 10.4%라는 가정하에 199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임.

資料： 재정경제부 소비세과 제공자료  
 각 전문자격사협회 제공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 營利目的 教育用役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免稅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훈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청강생에게 기술·지식을 가르치는 용역으로 정의함으로써 공·사립학교 법인 이외의 營利團體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까지도 면세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 공·사립학교 법인 이외의 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외국어·스포츠 등의 교육용역은 그 수요가 주로 고소득층이며 공·사립학교 법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課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득층일수록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지출의 비중이 큰 것을 <表 14>에서 알 수 있다. 교육비 비중, 특히 학원 등 사설교육용역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되는 補充教育費에 관한 통계는 지출계층별로 분류된 이 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表 15>에서와 같이 서울과 전도시 그리고 전가구와 근로자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소비지출이 많은 서울가구가 전도시가구에 비해, 그리고 전가구가 근로자가구에 비해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보충교육비 지출비중이 더욱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비영리교육을 대표하는 국내 사설학원의 계열별 분류에 의거하여 이들의 정원별 규모를 보면 事務系(주산·부기·타자학원), 文理系(외국어·입시학원), 藝能系(피아노·미술학원 등), 技術系, 家政系(요리학원), 綜合學院(문리계와 사무계를 병행) 및 독서실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특히 <表 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계열인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및 사무계의 총 수강인원은 연간 약 4,127만명으로서 이 인원이 영리교육단체의 교육서비스를 1년에 평균 한 달 정도 제공받고 있

〈表 14〉 全家口의 消費支出 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教育費와 利子支出 比重(1996)

(單位 : 千원, %)

지출계층	가계지출	교육비	이 자
350 미만	323.7	7.0 (2.2)	6.0 (1.9)
350~500	502.0	15.7 (3.1)	8.7 (1.7)
500~650	668.3	27.1 (4.1)	12.1 (1.8)
650~800	831.8	44.6 (5.4)	13.8 (1.7)
800~950	1,007.1	64.0 (6.4)	17.0 (1.7)
950~1,100	1,164.0	83.2 (7.1)	20.0 (1.7)
1,100~1,250	1,347.3	104.7 (7.8)	25.5 (1.9)
1,250~1,400	1,522.0	131.9 (8.7)	23.2 (1.5)
1,400~1,550	1,673.0	152.3 (9.1)	27.4 (1.6)
1,550~1,700	1,867.3	170.8 (9.1)	32.6 (1.7)
1,700~1,850	2,024.0	189.2 (9.3)	29.8 (1.5)
1,850~2,000	2,173.2	212.5 (9.8)	30.2 (1.4)
2,000~2,250	2,393.0	250.1 (10.5)	30.3 (1.3)
2,250~2,500	2,689.6	321.3 (11.9)	24.5 (0.9)
2,500~3,000	3,068.0	381.9 (12.4)	27.1 (0.9)
3,000~4,000	3,775.0	550.8 (14.6)	28.0 (0.7)
4,000 이상	7,594.9	654.0 (8.6)	26.5 (0.3)
	1,611.6	145.6 (9.0)	21.5 (1.3)

註 : 지출계층은 소비지출 기준임. 단, 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資料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6.

〈表 15〉 家口當 月平均 補充教育費 支出 推移

(單位：천원, %)

	총소비지출				보충교육비			
	전도시		서울		전도시		서울	
	전가구	근로자 가 구	전가구	근로자 가 구	전가구	근로자 가 구	전가구	근로자 가 구
1975	65.3	63.0	66.4	65.1	0.2 (0.3)	0.2 (0.3)	0.3 (0.5)	0.4 (0.5)
1980	214.5	207.0	235.1	227.0	1.6 (0.7)	1.4 (0.7)	2.0 (0.8)	1.8 (0.8)
1985	322.6	309.6	361.8	345.4	3.9 (1.2)	3.4 (1.1)	5.7 (1.6)	4.9 (1.4)
1990	685.7	650.0	740.6	692.9	22.3 (3.3)	18.5 (2.8)	30.0 (4.1)	24.4 (3.5)
1991	818.3	779.6	895.5	847.9	28.4 (3.5)	23.6 (3.0)	37.2 (4.2)	30.1 (3.5)
1992	941.9	902.5	1,025.9	961.9	36.5 (3.9)	32.1 (3.6)	47.5 (4.6)	41.4 (4.3)
1993	1,021.0	986.2	1,143.3	1,094.3	39.3 (3.8)	34.9 (3.5)	53.7 (4.7)	48.6 (4.4)
1994	1,140.4	1,113.7	1,312.1	1,264.8	46.0 (4.0)	39.2 (3.5)	66.0 (5.0)	56.0 (4.4)
1995	1,265.9	1,230.6	1,413.2	1,344.9	51.9 (4.1)	45.6 (3.7)	69.0 (4.9)	61.1 (4.5)
1996	1,426.9	1,395.4	1,607.5	1,529.6	59.7 (4.2)	52.3 (3.7)	78.0 (4.9)	66.7 (4.4)

註：1. ( )안은 총소비지출 대비 비중임.

2. 보충교육비는 1981년 이전에 '학원비'로 분류되었음.

資料：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이들이 계열별로 월평균 12만원~27만 5천원 정도의 수강료를 지불한다고 할 때 이들의 연간 수강료는 총 11조 3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국내 영리교육단체의 주요 계열별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시 예상되는 稅收效果는 부가가치를

〈表 16〉私設學院의 主要 教育用役に 대한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사무계	계
A. 학원수(개소)	9,119	7,078	21,197	18,739	56,133
B. 실제수강인원(명)	13,760,448	5,428,692	10,183,872	11,892,612	41,265,624
C. 월 수강료(만원) <sup>1)</sup>	26.5	27.25	18.1	12.05	26.75
D. 수강료 총액(억원)	36,465.2	14,793.2	18,432.8	14,330.6	110,385.5
E. 예상세수효과(억원) (D×50% <sup>2)</sup> ×10%	1,823.3	739.7	921.6	716.5	5,519.3

註 : 1) 신고가격기준이며 실제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음.

2) 부가가치를 50% 가정함.

資料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6.

50%를 가정할 경우 5,519억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수강료는 일반적으로 실제가격보다 낮은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적인 세수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3. 金融서비스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金融·保險用役に 대하여 非課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용역을 면세하는 이유는 무엇을 부가가치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概念上의 問題點과 行政的 어려움 그리고 금융 및 보험용역의 과세가 저축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핵심적 활동면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金錢 貸借機關이다.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신용확장을 통하여 통화를 창조하며, 금전을 대출하여 대출받은 자로부터 이자를 수취한다.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창출하는 附加價値는 기본적으로

로 대출이자와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利子の 差額이다. 만약에 예금주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뿐이라면, 은행은 이들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고 또한 貸出利子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과세하게 되며, 예금주에게 지급한 세액은 공제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방법은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하여 Shoup(1947)나 Steuerle(1985)는 이자가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래의 소비를 현재의 소비로 바꾸어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유발시키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3)</sup>. 그러나 미 재무성의 『1984 세계개혁 보고서』는 미래 소비를 현재로 앞당기는 기능 자체를 효용을 증대시키는 생산활동의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利子에 대한 附加價値稅 課稅가 타당하다고 보았다<sup>4)</sup>.

金融用役に 대한 課稅時의 또 다른 문제는 은행의 예금주 가운데 대부분이 사업자가 아니라 저축성예금이나 정기예금을 하는 개인이라는 데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예금주는 사업자등록을 한 附加價値稅의 納稅義務者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개인 예금주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사업자인 예금주에게만 은행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예금구좌가 ‘사업상’ 목적으로 개설된 것인지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개설된 것인지에 따라 개인 예금주는 달리 취급받게 된다.

利子에 대한 附加價値稅 課稅가 소득계층별로 어떤 세부담을 가지게 될 것인가는 <表 14>를 참고할 수 있다. <表 14>에서는 고소득층일수

3) C. Shoup, *Principles of National Income Analysis*, 1947, pp. 105~106.

C.E. Steuerle, *Taxes, Loans, and Inflation: How the Nation's Wealth Becomes Misallocated*, 1985, p. 47.

4) Office of the Secretary, Department of Treasury, *3 Tax Reform for Fairness, Simplicity and Economic Growth*, 1984, p. 51.

록 총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利子費用 支出의 比重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가계지출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낮아지므로 所得對比 利子費用 支出의 比重은 소득에 반비례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所得分配에 逆進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은 핵심적인 기능인 금융기능과 구분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手數料를 받기도 한다. 잔고가 일정금액 이상인 예금주에 대한 당좌예금 개설과 같은 서비스는 예금이자에 의하여 결산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 예컨대 대여금고 운영, 수표책 공급, 중개활동 등은 직접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手數料는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는 課稅되어야만 하고 또한 과세가 가능하다. 비록 대부분의 利子が 免稅되더라도 이러한 부수적 활동 때문에 금융기관은 여전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保險用役의 課稅對象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보험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주된 서비스가 무엇이나 하는 것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 저축성이 아닌 비생명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위험의 공동화(risk pooling)와 관련한 금융적 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이다. 이러한 금융적 중개서비스의 가치를 보험약조금(premiums)과 지급액(claims)의 차로써 측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保險會社의 收入保險料에 대한 과세는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과세하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銀行이나 保險의 金融서비스에 대하여 포괄적인 VAT 과세는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은행의 수수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1996년 기준으로 약 2,541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表 17〉 銀行部門의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單位：억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이 자 수 입	72,944	91,075	103,662	99,227	120,026	178,809	213,340	
수 보 증 료 등 수수료 수입(A)	7,039	8,858	10,185	12,476	16,766	23,366	27,443	
신 탁 수 익 등 기 타 수 입	7,838	9,082	12,842	18,682	32,205	23,638	23,755	
익 계(C)	87,821	109,015	126,689	130,385	168,997	225,813	264,538	
(A)×10%	704	886	1,019	1,248	1,677	2,337	2,744	
(C)×10%	8,782	10,902	12,669	13,039	16,900	22,581	26,454	
비 지 급 이 자	52,300	65,087	71,639	66,938	84,675	124,831	144,674	
지급수수료(B)	667	770	931	1,089	1,382	1,675	2,028	
기 타 지 급	1,041	1,242	1,587	1,552	2,301	6,910	10,905	
용 계(D)	54,008	67,099	74,157	69,579	88,358	133,416	157,607	
(B)×10%	67	77	93	109	138	168	203	
(D)×10%	5,401	6,710	7,416	6,958	8,836	13,342	15,761	
예상 세수 효과	(A)×10% -(B)×10%	637	809	925	1,139	1,539	2,169	2,541
(C)×10% -(D)×10%	3,381	4,192	5,253	6,081	8,064	9,239	10,693	

註：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 기준임.

資料：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7.

〈表 18〉 保險部門의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1996)

(單位：억원)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계
보 험 금(A)	245,051	63,307	308,358
보 험 료(B)	381,634	134,662	516,296
(B)×10%-(A)×10%	13,658	7,135	20,793

資料：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6.

#### 4. 政府業務 代行團體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政府業務 代行團體는 非課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면세되는 政府業務 代行團體의 範圍와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表 19>와 같다.

<表 19> 政府業務 代行團體의 範圍와 業務

관련 법	단 체 <sup>1)</sup>	업 무 <sup>2)</sup>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체신업무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체신창구의 업무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
농지개량조합법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조 및 제68조의 6에 규정된 사업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	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	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 단 식품가공업 <sup>3)</sup> 과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동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함 <sup>4)</sup> .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 어촌계 및 새마을양식계	법 제16조의 2, 제65조, 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과 새마을 양식계가 영위하는 사업. 단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함 <sup>4)</sup> .

〈表 19〉의 繼續

관련 법	단 체 <sup>1)</sup>	업 무 <sup>2)</sup>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법 제14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사업
인삼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법 제23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사업. 단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 을 제외)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을 제외
인삼사업법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백삼 및 태극삼의 검사업무 및 그 부대사업
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	법 제3조에 규정된 사업. 단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사업부문 과 상가의 분양 및 임대사업부문은 제외함.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	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한국산업인력관리공 단법	한국산업인력관리공 단	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협력단	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조폐공사	법 제18조에 규정된 사업. 단 부 대업무를 제외함.
임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산림계	법 제43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단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인삼제 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 및 인삼 ·홍삼제품제조업을 제외함 <sup>4)</sup> .

〈表 19〉의 繼續

관련법	단체 <sup>1)</sup>	업무 <sup>2)</sup>
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법 제53조, 제102조 및 제123조에 규정된 사업. 단 식품가공사업 <sup>3)</sup>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동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함 <sup>4)</sup> .
한국공항공단법	한국공항공단	공항시설의 관리·유지·운영 및 신공항건설사업과 그 부대사업, 기타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전화세법	전화사업경영자	가입전화사업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후생복지사업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단 연금매점사업을 제외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정도매인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
지방공기업법	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表 19〉의 繼續

관련법	단체 <sup>1)</sup>	업무 <sup>2)</sup>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
한국해운조합법	한국해운조합	선박의 안전운항관리업무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예의 입장, 주차장 및 야영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
어선법	한국어선협회	선박국적증서의 검인, 총통수 측정 및 개측, 어선의 검사업무
전파법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안전공단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민법(제32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민법(제32조)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민법(제32조)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註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부업무 대행단체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 규정된 사업을 말함.

3) 식품가공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소분업을 제외함) 및 첨가물제조업을 말함.

4) 각각의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市 이상 지역의 읍·면지역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러한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업무 중 民間과 競爭關係에 있는 업무로 農業·林業·水產業·畜產業協同組合과 葉煙草生産協同組合, 人蔘協同組合, 韓國空港公團, 公務員年金管理工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指定都賣人,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農水產物流通公社의 일부 업무가 부가가치세제도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면세 혜택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종 협동조합의 소매업, 공항관리공단의 음식점업, 공무원 연금공단의 소매업 및 휴양시설업 등은 가장 우선적으로 課稅轉換되어야 할 분야로 보여진다.

## VII. 結論 및 要約

附加價値稅의 免稅制度는 특정 업체나 업종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서 면세가 중간단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되어 價格體系를 왜곡하며 去來過程도 왜곡시키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制度에 따르면 미가공식품과 농·수·축·임산물, 수돗물, 연탄, 국민주택 그리고 의료보건영역, 교육용역, 보험용역, 국민주택건설용역,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생산요소 용역인 토지, 금융·보험용역 등과 전문적 인적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업(정부업무 대행업체)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및 농·어업용 석유류 그리고 수입된 재화가 附加價値稅 免稅對象이 되는데 최근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課稅衡平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인적용역과 학원 등의 영리교육용역 그리고 政府業務 代行團體의 일부 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지는 논의가 있었다.

法務·會計·技術서비스 등의 事業서비스는 여타 財貨와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法務·會計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高所得層이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비과세하는 것은 稅負擔의 逆進性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課稅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용역업 중 學術研究用役, 技術研究用役은 技術開發 支援의 政策的 차원에서 課稅轉換 對象에서 除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人的用役 분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稅收增加 이외에도 이 분야 용역제공자들의 課稅轉換 對象을 강제하게 되고,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附加價値稅 및 所得稅 納付稅額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 공·사립학교 법인 이외의 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외국어·스포츠 등의 教育用役은 그 수요가 주로 고소득층이며 공·사립학교 법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課稅하는 것이 타당하다.

銀行이나 保險의 金融서비스에 대하여 포괄적인 VAT 과세는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업무 대행단체를 보면 이 단체의 업무 중 民間과 競爭關係에 있는 업무로는 農業·林業·水産業·葉煙草生産協同組合, 人蔘協同組合, 韓國空港公團, 公務員年金管理工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指定都賣人,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農水產物流通公社의 일부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종 협동조합의 소매업, 공항관리공단의 음식점업, 공무원 연금공단의 소매업 및 휴양시설업 등은 가장 우선적으로 課稅轉換되어야 할 분야로 보여진다.

## 〈參考文獻〉

- 教育部, 『教育統計年報』, 1996.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각 연도.
- 金裕燦,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 免稅範圍 設定의 問題點과 改編方向』, 政策報告書 95-03, 韓國租稅研究院, 1995.
- 保險監督院, 『保險統計年鑑』, 1996.
- 財政經濟部, 「消費稅課 提供資料」
- 統計廳, 『都市家計年報』, 각 연도.
- 韓國銀行, 『銀行經營統計』, 1997.
- Atkinson, A. B. and J. E. Stiglitz, "The Structure of Indirect Tax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 1972.
- Blankart, C. B., "Income Taxation, Consumption Taxation,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Government Behavior," Barbara L. Wolfe(ed.), *On the Role of Budgetary Policy during Demographic Changes*, Proceedings of the 48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Seoul 1992, Supplement to Public Finance, Vol. 48, 1993.
- Brashares, E., J. F. Spreyer and G. N. Carlson, "Distributional Aspects of a Federal Value Added Tax," *National Tax Journal*, Vol. 30, June 1977.

- Crossen, S., "What Rate Structure for a Goods and Services Tax? The European Experience," *Canadian Tax Journal*, Vol. 37, September/ October 1989.
- \_\_\_\_\_, "What Rate Structure for a Value-Added Tax," *National Tax Journal*, Vol. 35, No. 2, 1982.
- Gahvari, F. and C. C. Yang, "Optional Commodity Taxation and Household Consumption Activities," *Public Finance Quarterly*, Vol. 21, No. 4, October 1993.
- McLure, G. E., Jr., "Economic Effects of Taxing Value Added," Richard A. Musgrave(ed.), *Broad Based Taxes: New Options and Sources*, 1973.
- \_\_\_\_\_, "What Can the United States Learn from the Canadian Sales Tax Debate?," John B. Shoven and John Whalley(eds.), *Canada-U.S. Tax Comparis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_\_\_\_\_, "Economic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Factors in Choosing a General Consumption Tax," *National Tax Journal*, Vol. 46, September 1993.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5, 1997.
- Office of the Secretary, Department of Treasury, *3 Tax Reform for Fairness, Simplicity and Economic Growth*, 1984, p. 51.
- Oh, Yeon Cheon, "An Evaluation of the Tax Reform for a Value-Added Tax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Distribution of Tax Burde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xport," 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February 1982.

- Owens, J. and E. Whitehouse., "Tax Reform for the 21st Century," *Bulletin, IBFD*, November/December, 1996.
- Sabelhaus, J., "What Is the Distributional Burden of Taxing Consump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46, 1993.
- Schenk, A. and Oliver Oldman, "Analysis of Tax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Consumption-Style VAT," *Tax Lawyer*, Vol. 44, No. 1, 1991.
- Shoup, C. S., "Choosing among Typer of VATs," Malcolm Gillis, Carl S. Shoup and Gerardo P. Sicat(eds.), *Value Added Tax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1990.
- \_\_\_\_\_, *Principles of National Income Analysis*, 1947, pp. 105~106.
- Steuerle, C. E., *Taxes, Loans, and Inflation: How the Nation's Wealth Becomes Misallocated*, 1985, p. 47.
- Tait, A. A., *Value Added Tax*, London: McGraw-Hill, 1972.
- \_\_\_\_\_, *Value Added Tax: International Practice and Problem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88.

〈국문요약〉

## VAT의 免稅 및 零稅率 適用範圍에 대한 評價와 調整의 基本方向

金 裕 燦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특정 업체나 업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써 면세가 중간단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되어 가격체계를 왜곡하며 거래과정도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과 농·수·축·임산물, 수돗물, 연탄, 국민주택 그리고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보험용역, 국민주택건설용역,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생산요소 용역인 토지, 금융·보험용역 등과 전문적 인적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업(정부업무 대행업체)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및 농·어업용 석유류 그리고 수입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최근 들어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인적용역과 학원 등의 영리교육용역 그리고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일부 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다.

법무·회계·기술서비스 등의 전문인적용역은 여타 재화와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법무·회계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비과세하는 것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과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의 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그 수요가 주로 고소득층이며 공·사립학교 법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업무 중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재화는 조속히 과세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인적용역, 영리목적 교육용역, 그리고 정부업무 대행단체 중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직접적인 세수증가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의 상호대사기능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전체의 과표 양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이나 보험의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VAT Exemption System :  
Evalu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

**Kim, Yu-Chan**

Under Korean VAT system the supply of following goods and services is subjected to exemption and the input tax incurred thereon is not refundable: basic life necessities and services, social welfare services, educational services, goods or services related to culture, personal services similar to labour, monopoly goods, postage stamps,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and to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or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s, and duty-exempted goods.

This VAT exemption system can cause increasing taxpayers burden unintentionally, in case the exemption is applied at the wholesaler stage of goods distribution, and accordingly induce a distortion of price system. For this reason and in addition because of the necessity of financing the enterpri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restructuring cost recently a discussion about reducing VAT exemption sphere has started.

Among the VAT exempted goods and services, professional personal services are the first one that must be taxed in the nearest future. We have no reason to distinguish this kind of services from other goods and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VAT taxation. Moreover, this pro-

professional personal services are consumed overproportionally by high income earner, so that the exemption of this kind of services can most likely bring regressive tax burden allocation. The educational services provided by profit motivated private organizations are the services of same category as the professional personal services.

The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re sometimes in competitive relation with the same kind of goods and services of private sector. For this reason the exemption of by government sector provided goods and services should have a distortional effect, because the same kind of goods and services from private sector is being taxed.

The conversion of vat exempted professional personal services, profit motivated educational services, and the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that are in competitive relation with the same kind of goods and services of private sector can bring us not only direct tax increasing effect but also tax(income tax and vat) base broadening effect via vat cross-checking system that works better with reduced vat exemption sphere.

But it seems better not to tax the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in this moment without integrative and profound research about the economic effect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vestment.